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261-14

www.mois.go.kr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CONTENTS

Ⅰ 주민조례 발안 제도 개요 2

1. 의의 2
2. 근거법령 2

Ⅱ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4

1. 청구권자 4
2.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5
3. 청구대상 8

Ⅲ 청구절차 14

1. 청구절차 흐름도 14
2. 청구절차 15
   - 가.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15
   - 나.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16
   - 다. 서명요청 20
   - 라.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24
   - 마.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7
   - 바.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28
   - 사. 청구의 철회 32
   - 아.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32
   - 자. 지방의회 발의 34
3. 지방의회 심사 34
4. 주민조례청구 전산처리 37

참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40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I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개요

1. 의의
2. 근거법령

Ⅰ 주민조례 발안 제도 개요

1 의 의

1999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되고 2022년 1월 시행되면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9조

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II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1. 청구권자
2.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3. 청구대상

II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1 청구권자

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법 제2조제2호)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생략〉

2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가 청구권자 총수의 산정

- 청구권자 총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법 제5조제2항)

나 청구권자 총수의 공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함(법 제5조제3항)
- 지방의회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에 연도별 청구권자 총수, 조례로 정한 최소연서수를 등록관리하여야 함

다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법률상 상한기준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수 이상의 연서(連署)가 청구에 필요함(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별 법률상(법 제5조제1항) 상한기준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됨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산출 예시

(예1)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는 25,000명임(2023. 5. 현재)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규모 기준 법률상 상한은 청구권자 총수의 1/200에 해당하고, 2023년 공표(2023. 1. 10. 서울시보 제3843호)된 청구권자 총수는 8,335,350명임. 따라서 청구권자총수의 1/200에 해당하는 41,677명(41676.75)이하에서 조례로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정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를 25,000명으로 정하고 있음

(예2)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는 32,951명임(2023. 5.현재)
- 경기도의 경우 인구규모 기준 법률상 상한은 청구권자 총수의 1/200에 해당하고, 2023년 공표(2023. 1. 10. 경기도보 제7164호)된 청구권자 총수는 11,532,558명임. 따라서 청구권자총수의 1/200에 해당하는 57,663명(57662.79)이하에서 조례로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이를 청구권자 총수의 1/350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11,532,558×1/350=32950.16…이므로, 경기도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32,951명임

Q&A

Q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10분의 1범위의 의미는?

A 상한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정해야 함

(법제처, 13-0088)

3 청구대상

가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나 청구제외대상(법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법령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법 제4조에 따른 행정기구 판단기준

-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설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함
-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실, 본부, 국, 과, 담당관, 보조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지역본부, 의회사무기구,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립대학, 지방공무원훈련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참조), 청구된 주민조례의 내용에서 규정하는 사무가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자문기관은 행정기구가 아니므로, 청구된 주민조례가 위원회 등의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 아님

- 청구된 주민조례안에서 일정한 사무에 대해 정하고, 그 사무를 분장할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위원회" 등을 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막연히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담당 사무가 위탁가능한 사무인지,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청구된 주민조례안의 시행으로 실, 본부, 국, 과 등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구 제외사항으로 볼 수 있고 단지 기존에 설치된 행정기구가 분장할 사무가 창설 또는 증감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Q&A

Q 주민이 댐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청구 제외 대상인지?

A 자문기관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

- 법 제4조 관련, 댐건설로 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피해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위원회라면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관에 해당한다면 댐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소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 의견 11-0012)

Q&A

Q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00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에 포함되어 청구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제외대상아님, 주민조례청구 가능

- 00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기업의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구”와 구별되며, 도로·공원 등과 같이 物로써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시설”과도 구별됨.

- 결국, 00시 시설관리공단은 법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조례 제·개폐 청구 제외대상인 “행정기구”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시 시설관리공단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시설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1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Q&A

Q **법 제4조제3호의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해당되는지 여부**

A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례안 심사 시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을 초래하는지 고려가 필요**

- 법 제4조제3호에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주민이 자치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시 청구된 정원조례안의 내용이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III

청구절차

1. 청구절차 흐름도
2. 청구절차
3. 지방의회 심사
4. 주민조례청구 전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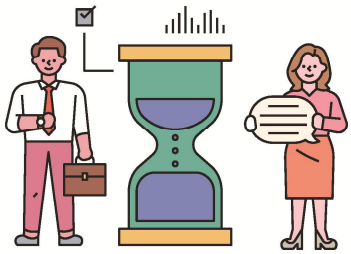

Ⅲ 청구절차

1 청구절차 흐름도

파란색 : 청구인(대표자) 할 일, 검정색 : 지방의회 할 일

2 청구절차

가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18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면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해당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첨부하여야 함 (법 제6조제1항)
-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의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법 제6조제1항)
- **(전자서명 이용신청)** 전자서명 이용을 위해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 (이하 "주민e직접 플랫폼") 이용을 신청
- 청구서 제출 등 신청방법

1) 청구권자가 직접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 지방의회는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에서 접수된 청구확인 및 접수처리

2) 청구권자가 서면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의회에 신청

- 지방의회는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관리에 등록

3) 지방의회는 전자서명 이용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관리

주민e직접 플랫폼의 주소 : www.juminegov.go.kr

Q&A

Q 청구인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서명기간 중에 '선거권 없는 자'가 된 때 당해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한지?

A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날부터 받은 서명은 효력 없음, 대표자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 필요

- 수임자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그 수임자가 요청하여 받은 서명은 무효
- 대표자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표자가 요청하여 받은 서명은 무효이며, 다른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대표자 변경 필요

나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법 제6조제2항)

-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는 청구권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함
- 대표자의 선거권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 권한 요청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 후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지자체의 선거권제한자 목록과 대조하여 선거권 유무 확인

(공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사실 공표

- **(공표내용)**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 시 공표에 포함할 사항)**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e직접 플랫폼의 인터넷주소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과 그 취소 방법을 포함하여 공표(법 제6조제2항)
  - 지방의회는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공표관리)을 통해 주민e직접 플랫폼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을 게시(법 제6조제2항)

Q&A

Q 대표자가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처리방법?

A 청구서 반려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 대표자가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 및 대표자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서는 반려하여야 함.

Q&A

Q 주민조례청구의 내용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법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면 청구권자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외의 제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청자가 청구권자인 경우 다른 사유를 이유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하고 있고 각하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대표자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청구가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 전에 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법제처 해석, 09-0399)

Q&A

Q 18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2023년 12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청구인명부의 제출 시기는 2024년 이후가 됨) 주민 총수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A 주민 총수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명부 제출 시점임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여(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하므로(법 제5조제3항) 매년 그 수가 변동되며, 청구인명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자 총수를 정하여야 함
-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0일에 공표된 주민 총수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Q&A

Q 대표자증명서 공표시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A 일부 개인정보를 비공개 조치하고 공표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에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상 해당 시스템에 위 문서를 게시하여야 하나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는 조례로 구체화 되고 있으므로 상세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조치할 수 있음.

Q&A

Q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지?

A 각하 사유에 해당 여부 사전 안내 가능(재량사항)

- 청구인명부 제출 후 청구제외사유 해당을 이유로 한 청구 각하를 방지하고, 사전에 주민조례 청구안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구제외 대상(법 제4조)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음.

Q&A

Q 주민조례청구된 조례안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가능한지?

A 홍보 관련 제한은 없음

- 주민조례청구 서명 관련 홍보 주체, 방식 등 규정의 제한은 없으나, 서명요청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 할 수 있어, 그 외의 자가 요청하여 받은 서명은 효력이 없음.

Q&A

Q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표자는 000외 0명으로 표시하여 별지로 대표자 등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별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A 대표자 수에 따라 두가지 모두 사용가능

- 청구인의 대표자를 2명 이상 선정한 경우, 이는 주민이 대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2명 이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대표자는 그 수가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대표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둘 이상의 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공동대표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동대표자 모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할 것임 (대표자 수에 따라 대표자를 모두 표기하거나 별지 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다 서명요청

1) 서명요청 시 첨부서류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 **(서명요청 시 첨부서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 첨부(법 제7조제3항)

- **(서명요청권 위임)**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함(법 제7조제2항)

  * '즉시'의 의미는 수임자에 대한 18세 이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권 유무 등의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위임신고증을 발급하라는 의미임

  - 수임자가 서명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법 제7조제3항)

Q&A

Q 대표자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A 없음. 다수인에게 위임 가능

- 현행 법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대표자는 다수인에게 위임이 가능함.

2) 전자적 방식의 서명 요청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주민에게 청구인명부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주민e직접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7조제4항)

- 대표자 및 지방의회는 서명요청 기간동안 온라인 청구인명부의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없음. 다만,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실시간 전자서명 총수를 확인가능

  -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온라인 청구인명부도 확인가능하며, 청구인명부와 중복 서명으로 인한 청구요건 수 부족 시 보정기간 부여

3) 서명요청기간

-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 · 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법 제8조제1항)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서명요청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않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14일)

Q&A

Q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에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급 후 보궐선거가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A **제외기간(선거기간)을 반영한 대표자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공표해야 함**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서명요청 기간 내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서명요청 제외기간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보궐선거 등 선거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제외기간을 명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서명요청 기간 내에 선거기간이 확정되면 제외기간을 반영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할 것임

Q&A

Q 서명요청기간 중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서명이 어려울 경우 서명요청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중단)할 수 있는지?

A 연장(중단)할 수 없으며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법에 서명요청기간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장(중단)할 수 없음.
- '18. 1. 9.부터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서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서명방법

- **(오프라인)** 주민은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 (법 제9조제1항).
- **(온라인)** 대표자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주민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서명 가능(법 제9조제1항)
  - 전자서명시 성명·생년월일 · 주소 및 서명일자는 직접 적은 것으로 봄.

Q&A

Q 조례에 규정된 청구인명부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경우, 그러한 서명의 효력 유무

A 청구인명부가 법률상 필수기재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서명 연월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조례가 정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있더라도 유효함

- 주민조례청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효하지 않은 청구인명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대표자 등 적법한 서명요청권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주민조례의 청구에 동의하기 위하여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Q&A

Q 청구인명부를 한 장에 1명씩 작성하여도 괜찮은지?

A 1장에 한명씩 작성해도 무방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청구인명부 서식에는 한 장에 다수인이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장에 1명씩 작성하더라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서명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유효한 서명으로 판단됨.

Q&A

Q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판단 시점은?

A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5)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하고 청구인명부의 해당 서명에 붉은 선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취소일자를 기재

- **(온라인)**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취소함(법 제9조제3항).

라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1) 청구인명부의 작성(법 제9조제4항)

- 작성방법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

2) 청구인명부의 제출(법 제10조제1항)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함.

- **(제출기간)**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

-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주민e직접 플랫폼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을 위해서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의 청구권자 여부의 일괄 확인을 위해 청구인명부(성명, 주소, 생년월일)의 전자정보화가 필요하고, 소요기간 만큼 청구의 수리 결정이 지연되므로 지방의회는 청구인명부 제출 시부터 법 제14조에 따라 집행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청구인명부를 전자정보화하여야 할 것임(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엑셀양식을 활용).

Q&A

Q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

A 서명요청기간 도래 전이라도 청구요건 충족 시 청구인명부 제출 가능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법제처 해석례16-0138)

Q&A

Q 조례제정 입법예고 기간 중에 비슷한 조례명 및 내용으로 주민조례제정청구서가 접수되면 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는 사유로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는지?

A 반려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입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입법예고 기간 중일지라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여부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의 형태가 될 것임.

3) 공표

- **(공표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표(법 제10조제2항)
- **(공표내용)**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 **(공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Q&A

Q 청구사항 공표 시 기간산정 기준은?

A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

- 2019. 7.16.(화) 청구를 받았다면 공표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민법 §157)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만료일은 그 다음 날(민법 §161)인 7. 22.(월) 됨.

Q&A

Q 청구인명부 제출 후 대표자의 성명 ·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꼭 공보에 게재해야 하는지?

A 반드시 공보에 게재할 필요 없음

- 공표의 방법은 선택적이므로 공보 게재, 게시판·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 등 중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무방하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할 것임.

마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0조제2항).
- **(열람장소)**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공개된 장소

2) 이의신청(「지방자치법」 §15⑤)

-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신청(법 제11조제2항)

  ♠ 이의신청 서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 **(이의신청 기간)**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Q&A

Q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청구인명부를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할 수 있음

- 법은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한 인적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열람을 통해 누구든지 서명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명부의 공개 및 열람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로서 청구인명부검증을 위해 청구인명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다만, 열람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Q&A

Q 조례 제정 또는 개정·폐지 청구에 반대하는 주민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청구된 내용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주민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제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정 또는 개·폐 청구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된 내용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주민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바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1) 서명 유·무효 확인

(기준시점) 유효서명 확인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유·무효기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명을 무효로 결정(법 제11조제1항)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청구권자 검증(새올행정시스템에서만 가능)

- **(주민여부 검증)** 청구인명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엑셀화하여 각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서명부)에서 주민 여부 일괄 검증

- **(선거권 검증)**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권한 요청 후 시·군·구별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제한자 목록 열람 후 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대조하여 선거권 확인

※ 시·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청구권자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검증하여야 함

- **(지방의회 자체판단 서명 유·무효 검증)** 청구인명부 서명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서명의 무효 결정

(결과통지) 서명에 대해 무효결정 시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

Q&A

Q 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간은?

A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 기간이 끝난 날(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날(보정된 청구인명부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따라 수리·각하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고려하여 서명의 유·무효 확인이 필요함.**

2) 이의신청 심사·결정

(심사·결정 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법 제11조제3항)

(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의규칙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법 제11조제6항).

결과통지(법 제11조제3항)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3) 보정 및 공표

(보정기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서명무효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청구권자수가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 경우 15일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내에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하게 할 수 있음(법 제11조제4항)

(공표)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 (법 제11조제5항)

-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명부 제출 시와 동일하게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침.

보정의 기회는 1회만 부여

- 법 제11조제5항은 보정절차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고 있으므로,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절차 후에는 보정기회 부여 규정(법 제11조제4항)이 준용되지 않음

주민조례발안 제도 공표사항

① 18세 이상의 청구권자 총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 (법 제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
②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그 취지 공표 (법 제6조제2항)
③ 청구인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공표 (법 제10조제2항)
④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공표 (법 제11조제5항)

Q&A

Q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함**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함.

(법제처 해석, 10-0005)

사 청구의 철회

- **(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개시된 후 사정변경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 **(철회권자)**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 필요)
- **(가능기간)**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전까지
- **(방 법)**
  - 서면 제출 후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를 요함
  - 철회 시에는 대표자 및 수임자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철회서 제출 필요

Q&A

Q 청구서 제출 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다만 대표자 전원이 주민조례청구 수리 전까지 철회신청서 서면 제출하도록 함.

아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수리 또는 각하 요건(법 제12조제1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절차가 끝나고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청구 요건

- 조례안이 법 제4조에 따른 청구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을 것
-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이상일 것

수리 또는 각하 처리 기한 신설(법 제12조제2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 지방의회의 의장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처리절차(법 제12조)

-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함(서면통지를 의미함).
- 청구를 각하하려면 사전에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지방의회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시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공표 관리에 수리·각하 여부 및 사유를 등록관리하여야 함.

Q&A

Q 주민조례청구가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지?

A 청구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 따라서 각하 사실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부, 청구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필요 있음(「행정절차법」 제26조 참조).

자 지방의회 발의

- **(의안 발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을 발의(법 제12조제3항)

Q&A

Q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된 내용을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법조문 형식 및 체계정리 차원의 수정은 가능

- 조례안의 형식을 갖추어 청구된 경우 청구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조문 형식 및 체계 정리 차원의 경미한 자구 수정은 가능

3 지방의회 심사

- **(심사절차)**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법 제13조제1항).
- **(임기만료 시 폐기 예외)**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음(법 제13조제3항)
- **(대표자를 통한 청구취지 설명)**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답변 등 청구취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음 (법 제13조제2항).
- 지방의회는 주민조례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공표관리에 가결·부결 등 처리현황 및 결과를 등록관리하여야 함.

Q&A

Q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표자의 설명 없이 의회 심의가 가능한지?

A 대표자의 설명없이 의회심의 가능

- 법 제13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대표자의 설명 없이 심의가 가능하며, 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임.

Q&A

Q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A 수정의결가능, 위원회결정으로 폐기 불가능

- 주민조례안에 대한 의결 역시 가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도 가능함.
-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청구권자의 서명을 거쳐 청구되고, 이미 지방의회가 법령위반 등 사유를 확인한 후 수리되는 주민조례청구의 특성상 발의 후 조례안의 수정은 서명의 대상이었던 청구취지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법 제13조는 주민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의 후 1년이내에 의결하도록 지방의회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조례안과 달리 의결되지 않더라도 청구를 수리한 지방의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조례안을「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주민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해당 주민조례안을 수리한 지방의회의 다음 지방의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의결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폐기될 수 없고 지방의회는 법 제13조 및 법 전체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정할 수 있음.

Q&A

Q 같은 조례명으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 신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 및 공표가 된 후 청구인 서명기간 중에라도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내용 및 조례명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주민조례제정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겠으나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Q&A

Q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A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됨

- 법에 주민의 조례 개폐청구에 있어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이에 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시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받은 경우 등 두 번에 걸쳐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공표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됨.

4 주민조례청구 전산처리

지방의회는 전자서명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그 현황을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주민e직접플랫폼에 등록·관리

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매년 청구권자 총수가 공표되면 지방의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에 연도별 청구권자 총수, 조례로 정한 최소연서수 등록

  ※ 주민조례청구가 없더라도 각 지방의회가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이하 나.항부터는 주민조례청구가 있는 경우 등록

나 청구접수 및 등록

1) 청구권자가 직접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청구한 경우

-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관리)에서 제출된 청구확인 및 접수처리

2) 청구권자가 서면으로 지방의회에 청구한 경우

-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관리)에 등록

다 대표자등명시 발급 및 공표

-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관리)을 통해 주민e직접 플랫폼에 주민조례청구서, 주민청구 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 사본을 게시

라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경우(보정시 포함)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관리)에 청구서 제출일자, 수기서명수 등록

- 이의신청 절차 및 유효서명 확인 종료시(보정시 포함)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서 명부)에 이의신청 후 무효로 인정된 서명수, 수기 서명부 심사 후 무효서명수 등록

▶ 서명 유·무효 검증

- **주민여부 검증** 청구인명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엑셀화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조례청구서명부)에 업로드 후 각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검증
- **선거권 검증** 행정안전부에 결격사유시스템 열람권한 요청 후 시·구·읍·면별로 결격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제한자 목록 열람 후 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대조하여 선거권 확인
- **지방의회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에 따른 서명 유·무효 확인(법 제11조제3항) 및 수기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지방의회 자체 유 ·무효 판단(법 제11조제1항)

마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시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관리)에 수리·각하 여부 및 사유, 결과처리일 등록

바 지방의회 심사후 처리

- 주민조례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청구관리)에 발의일, 처리현황(가결·수정의결·부결·처리기한 연장 여부)및 공포·시행일 등록

사 주민조례청구 통계

- 시도·새올행정시스템-주민조례청구에서 주민조례청구 통계 및 주민조례청구조례별 현황 등 조회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참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참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 · 개정안 ·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 ·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경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 ·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의회의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 · 도　　○○시 · 군 · 자치구(총○○권 중 제○권)
○○시 · 군 · 자치구　○○읍 · 면 · 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의회의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의회의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발　행　2024년 7월
인　쇄　2024년 7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문의처　044-205-3386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